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9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1월 8일, 이현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현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진발생으로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·보고하고 있지만, 이에 대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험도 평가 결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 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지진발생으로 건축물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자치구 지역본부장¹⁾이 서울시 지역본부장²⁾에게 제출하는 위험도 평가³⁾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) ① (생략) ②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제7조(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

-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- 또한, 위험도 평가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결과 중간보고서를 서울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3개월 이

1)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자치구청장)
 2)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서울특별시장)
 3)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: 지진발생으로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정도를 표시하는 것

내에 최종보고서, 사진 등 위험도 평가 활동 결과물 일체를 서울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해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.

- 본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지역본부장이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붕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의회차원의 지원 가능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,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7조(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구 지역본부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